

# 감 사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보험료 등 제경비 계약심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사’에 해당되며, 지방공사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SH공사에서는 기획경영지원본부 내에 계약심사부를 두고 예정 가격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SH공사 「계약심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표 1]의 사업을 공사부문 자체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87개 사업의 계약심사(설계변경심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표 1] 공사부문 계약심사 대상사업

| 구 분 |                | SH공사 계약심사 대상             |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 |
|-----|----------------|--------------------------|-------------|
| 공사  | 종합(토목, 건축)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금액 5억원 미만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
|     | 종합(조경)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금액 3억원 미만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
|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초과 추정금액 3억원 미만 |             |
|     |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추정금액 3억원 미만 |             |

## ①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1호, 2016. 11. 24.) 및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2017. 12. 29.)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해당 공사 노무비의 0.87%(유자격자 명부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와 4.05%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 대한 계약심사를 할 때는 해당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급금액에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잘못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SH공사(계약심사부)에서 2017. 8. 29. 계약심사한 “가양4단지 도로 및 보도 교체공사” 등 [표 2]의 2건 공사는 고용보험료를 해당 공사 노무비(직접 노무비+간접노무비)의 0.87%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 경비)의 0.87%로 잘못 계상하였는데도, 이를 계약심사에서 바로 잡지 못해 예산 2,770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고용보험료 과다 계상 사업

| 연번 | 의뢰부서 | 사 업 명   | 심사      | 과다 계상액<br>(제경비 포함, 천원) | 예산 낭비액<br>(낙찰율 적용, 천원) |
|----|------|---------|---------|------------------------|------------------------|
| 1  | 가부   | 몽몽 교체공사 | '17.08. | 2,508                  | 1,725                  |
| 2  | 가부   | 뽕뽕 교체공사 | '17.08. | 1,462                  | 1,045                  |
| 계  |      |         |         | 3,970                  | 2,770                  |

아울러 SH공사에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계약심사(설계변경심사 제외)한 공사 12건을 확인한 결과 7건(58%)이 2018. 1. 1.부터 적용되는 산재 보험료율(노무비의 4.05%)을 적용하지 않고 2016년 기준인 3.8% 또는 2017년 기준인 3.9%로 잘못 적용되었는데도, 계약심사에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해 산재 보험료 산정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고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②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르면 공사원가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고, 공사원가 계산에 있어서 간접노무비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등 현장관리 인건비를 의미하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고, 경비 항목에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지급수수료 등이 있으며, 기타경비란 경비 항목 중 직접적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6개 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을 말하고,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자체 분석을 통해 매년 2월 또는 3월에 조달청 발주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활용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표 2]와 같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발주기관 자체 제비율 적용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달청 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표 2] 조달청 건축·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 구 분<br>[(재+직노+산출경비)가 50억원 미만인 공사] |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       | 공사기간 7 ~ 12개월 |       | 공사기간 13 ~ 36개월 |       |
|-----------------------------------|------|-------------|-------|---------------|-------|----------------|-------|
|                                   |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 간접노무비율[(직노)×율]                    | 2016 | 9.9%        | 11.9% | 9.4%          | 11.4% | 8.4%           | 10.5% |
|                                   | 2017 | 9.7%        | 11.6% | 9.4%          | 11.3% | 8.5%           | 10.6% |
| 기타경비율[(노+재)×율]                    | 2016 | 5.0%        | 6.1%  | 5.1%          | 6.1%  | 6.1%           | 6.5%  |

따라서 SH공사에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및 기타경비가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과다하게 잘못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액 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SH공사(계약심사부)에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계약심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이 조달청 기준보다 높게 적용되어 있고 기타경비가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이 아닌 재료비, 노무비와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방화2-1단지 임대지하상가 승강기 교체공사” 등 6개 공사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예산 2,971천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계약심사 후 사업집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1개 공사(표 3의 연번 5)는 사업부서에서 수정 후 발주하였고 5개 공사에서 1,095천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표 3]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과다 계상 사업

| 연 번 | 사 업 명       | 심사      | 과다 계상액<br>(제경비 포함, 천원) | 예산 낭비액<br>(낙찰율 적용, 천원) | 비 고                                                        |
|-----|-------------|---------|------------------------|------------------------|------------------------------------------------------------|
| 1   | ㄹㄹ 통신공사     | '16.04. | 265                    | 230                    | 기타경비율 6.1% 적용해야 하는데 6.3% 적용                                |
| 2   | ㄷㄷ 인테리어공사   | '16.07. | 439                    | 385                    | 기타경비율 5.0% 적용해야 하는데 5.2% 적용                                |
| 3   | ▷▷ 리모델링공사   | '16.08. | 303                    | 266                    | 기타경비율 5.0% 적용해야 하는데 5.2% 적용                                |
| 4   | ♠♠ 승강기 교체공사 | '16.10. | 59                     | 52                     | 간접노무비율 9.9% 적용해야 하는데 10.51% 적용                             |
| 5   | ♡♡ 담장보수공사   | '17.09. | 1,717                  | 발주전 수정                 | 기타경비는 (재료비+노무비)×율로 계산해야 하는데 (재료비+노무비 +산출경비)×율로 계산          |
| 6   | ♣♣ 유지보수공사   | '18.01. | 188                    | 162                    | 간접노무비율 11.3%(2017년 토목공사, 공사기간 7~12개월 기준) 적용해야 하는데 11.4% 적용 |
| 계   |             |         | 2,971                  | 1,095                  |                                                            |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br>계상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률(%)                                                               |                                                                                                                        |                                                                                |
|---------------------------------------------------------------------------|---------------------------------------------------------------|--------------------------------------------------------------------------------|------------------------------------------------------------------------------------------------------------------------|--------------------------------------------------------------------------------|
|                                                                           |                                                               | 대상액 5억원 미만                                                                     | 대상액 5억원 이상 ~<br>50억원 미만                                                                                                | 대상액 50억원 이상                                                                    |
| 관급자재가<br>없는 공사                                                            | (재료비+직접노무비)×율                                                 | 일반건설<br>갑 2.93<br>을 3.09<br>중건설<br>3.43<br>철도·궤도 신설<br>2.45<br>특수 및 기타<br>1.85 | 일반건설<br>갑 1.86+5,349천원<br>을 1.99+5,499천원<br>중건설<br>2.35+5,400천원<br>철도·궤도 신설<br>1.57+4,411천원<br>특수 및 기타<br>1.20+3,250천원 | 일반건설<br>갑 1.97<br>을 2.10<br>중건설<br>2.44<br>철도·궤도 신설<br>1.66<br>특수 및 기타<br>1.27 |
| 관급(도급자관급)<br>자재가 포함된 공사                                                   | a.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율<br>b.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br>⇒ a와 b중 적은 금액 |                                                                                |                                                                                                                        |                                                                                |
| ※ 대상액 : 위 기준의 ( )안 금액, a와 b의 대상액이 다르므로 대상액에 따라 적용하는 율도 a와 b의 계산에서 다를 수 있음 |                                                               |                                                                                |                                                                                                                        |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추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은 해당공사 직접노무비의 2.3%를 계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SH공사에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과다 계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를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SH공사(계약심사부)에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계약심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액 또는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성산 임대아파트 외 2개단지 인터폰 보수공사” 등 4개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10,033천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추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임대주택 계량기 교체공사(강서권역, 노원권역)” 등 4개 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예산 9,597천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계약심사 후 사업집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에서 감액 후 발주, 설계변경 및 준공 시 감액하는 등 정산이 이루어져 1개 공사(표 4의 연번 4)에서만 퇴직공제부금비 210천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계상 사업

| 연번 | 의뢰부서 | 사 업 명     | 심사      | 과다 계상액<br>(제경비 포함, 천원) | 조치사항    |
|----|------|-----------|---------|------------------------|---------|
| 1  | 나센터  | ▲▲ 보수공사   | '15.10. | 1,958                  | 준공 시 정산 |
| 2  | 다센터  | ▼▼설비 추가공사 | '16.10. | 2,410                  | 준공 시 정산 |
| 3  | 라센터  | ◀◀ 보수공사   | '17.06. | 737                    | 준공 시 정산 |
| 4  | 마부   | ▶▶ 리모델링공사 | '17.09. | 4,928                  | 발주 전 감액 |
| 계  |      |           |         | 10,033                 |         |

[표 4] 퇴직공제부금비 과다 계상 사업

| 연번 | 의뢰부서 | 사 업 명   | 심사      | 과다 계상액<br>(제경비 포함, 천원) | 조치사항                  |
|----|------|---------|---------|------------------------|-----------------------|
| 1  | 바부   | ♠♠ 교체공사 | '16.05. | 4,864                  | 발주 전 감액               |
| 2  | 사센터  | ♥♥ 교체공사 | '16.11. | 397                    | 계약 시 감액               |
| 3  | 아부   | ♣♣ 교체공사 | '17.08. | 2,619                  | 준공 전 감액               |
| 4  | 자부   | ◆◆ 보수공사 | '17.09. | 1,717                  | 준공 시 일부감액<br>낭비 210천원 |
| 계  |      |         |         | 9,597                  |                       |

##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공사 제경비 계상에 관한 계약심사 소홀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규정 교육실시 및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